

설비를 증설하거나 일부 변경했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까요?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라도, 증설·교체·개조·이전 시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재제출은 아니지만, '주요 구조부분 변경' 또는
별도 대상설비에 해당하면 다시 제출 검토가 필요합니다.



01 먼저 두 가지 제출기준을 구분하세요

1 업종 + 사업장 규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3개 대상 업종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사업장

- | | |
|--------------------------|--------------------|
|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8 기타 제품 제조업 |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5 식료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2 특정 유해·위험설비 기준



업종·규모와 별도로 검토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건강장애 우려 물질의 밀폐·환기·배기설비



300kW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가장 중요한 기준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대상 제조업 + 300kW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1 증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제품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계가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전기정격용량 합계가 100kW 이상인 제품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100kW
이상 증가
또는 이전 시
검토! ↑

💡 기계 한 대가 100kW를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설비 증가분의 '합계'를 봅니다.

03 이런 경우 다시 검토하세요

사례	검토 내용
40kW 기계 1대 단순 추가	100kW 기준에는 미달할 수 있으나 별도 대상설비 여부 확인 필요
동일 증설계획으로 60kW + 50kW 기계 추가	합계 110kW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 검토
150kW 생산설비 일부를 다른 위치로 이전	100kW 이상 규모 설비 이전 → 제출대상 검토
기존 화학설비에 반응기 추가	화학설비 세부 제출기준 및 주요 구조부분 변경 여부 별도 검토
기존 건조설비의 주요 사양 변경	건조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 확인 필요
단순 소모품 또는 동일 규격 부품 교체	일반적으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 가능성은 낮지만 변경내용별 확인 필요

04 설비 변경 전 실무자가 확인할 7단계



05 실무 포인트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 계획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변경부분 및
관련부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구매 후가 아니라
투자계획 단계에서 먼저
검토해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설비는 단순 전기용량만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 설비 추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핵심 정리



- 설비를 변경했다고 모두 재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100kW 이상 주요 구조부분 변경, 100kW 이상 설비 이전, 별도 대상설비 설치·변경은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이라면 관련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설비 발주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오늘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